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(內)事(件)

## 特許權利範圍確認

<大法院 第1部 判決> (1981. 10. 27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이 성 열

關與法官: " 이 일 규·전 상 석·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풍남산업주식회사(경기 부천시 춘의동 155-1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: 한미실업주식회사(경남 양산군 물금면 우산리 1블록 6노트)
3. 原審決: 特許廳 1980. 7. 1字, 1979年 抗告審判 (당) 52 審決
4. 主 文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### 5. 理 由

被審判請求人 代理人의 上告理由 (辯駁書는 上告理由를 補充하는 範圍內에서 判斷한다)를 본다.

記錄에 의하여 審判請求人이 製造하는 合成樹脂製 나선호스의 製造方式 및 形狀 등을 表現한 審判請求書 添付(가)號圖面과 1979. 4. 7 字 審判請求人代理人 提出의 辯駁書 添付(가)號圖面(補正)을 서로 比較하여 보면 後者의 圖面은 前者를 보다 明瞭하고 正確하게 補正한 것에 지나지 않음이 分明하므로 이와같은 趣旨로 判斷한 原審措置는 正當하고 또 위와같은 圖面에 의하여 表現된 審判請求人의 製造方式 내지 그 物件이 所請과 같이 實質的으로 實施不可能하거나 使用不可能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原審決

에는 所論과 같은 誤記變更에 관한 法解釋을 誤解하거나 審判請求의 適法要件을 看過한 違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論旨는 모두 理由 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### — 參 考 —

#### 抗告審

1979年 抗告審判 (당) 第52號

抗告審判請求人: 한미화학공업주식회사

被抗告審判請求人: 풍남산업주식회사

위 當事者間의 1978年 審判 第122號(特許 第3633號의 權利範圍確認

審判) 審決不服 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: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### 審 決

1978年 審判 第122號

審判請求人: 풍남산업주식회사

被審判請求人: 한미화학공업주식회사

위 當事者間의 特許 第3633號의 權利範圍確認 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: (가)호 도면 및 그 說明書에 記載된 合成樹脂製 나선호스는 特許 第3633號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.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